도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 411회 임시회 2023. 9. 6.(수)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성대 의원 대표발의】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91 2023. 9. 6.(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성대 의원 등 8명

(김성대, 이태훈, 최정훈, 유상용, 박병천, 박용규, 김종필, 안지윤)

나. 발의일자 : 2023년 8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9월 6일

-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성대 의원)

가. 제안이유

○ 올림픽과 함께 2대 국제스포츠종합경기로 꼽히는 세계 대학 생들의 최대 스포츠축제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세계적인 행사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 기반시설 및 대회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인 현장 방문 및 상황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적지원을 통해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함
- O 대회 폐회 이후 체육 기반 시설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복합문화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4개 시· 도 의회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이라 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세계 대학생의 우호와 친선을 도 모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제대회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함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동 위원회는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 기반 시설 현장 점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 O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12명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 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함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 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3.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이덕항)

가.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

-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560만명의 충청인 염원을 한데 모아 유치에 성공하여 충청권 사상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종합경기대회이며 참가인 원은 150여 개국 1만 5000명 규모임
- 2027년 8월 중 충북 11개소, 충남 12개소, 대전 4개소, 세종 3개소 등 4개 시·도 30개소의 경기장에서 공동 분산 개최하면 서 경제적 파급효과 2조 7000억원, 취업 유발 1만명, 고용유발 7000명 등 직·간접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6월 공식 출범하여 조직 운영, 재원 조달, 경기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성공적인 국제대회 준비, 개최, 운영 등을 위해 선수단 환영식, 개막식, 경기장 설치, 선수촌 운영 등 기능별 준비사항을 시찰하고 추진과정 점검, 대회관련 현안사항 적극 대응 등을 위해 충청북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의 타당성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제35조 규정에 따라 의회는 특별 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 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동 특별위원회는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를 위해 체육 기반시설 현장 점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 축 등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한 제반 사항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 로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원정수, 활동기간 등 구성요건 적합성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제31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같은 조례 제36조 규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가 13명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 효율적인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위원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대규모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등을 위해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 12명 이내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동 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에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함에 따라 같은 조례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특별위원회는 명확하게 활동을 종료하기 위해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임기 및 특별위원회 종료일인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적극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동 특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제출해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 5. 토 론 요 지 : "없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의안번호 | 제 391 호 |
|------|-----------|
| 의 결 | 2023년 월 일 |
| 연월일 | (제 회) |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발 의 자 | 김성대 의원 등 8인 |
|-------|--------------|
|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9일 |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성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 발의연월일: 2023년 8월 29일

발 의 자: 김성대, 이태훈, 최정훈

유상용, 박병천, 박용규

김종필, 안지윤

1. 주 문

-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세계 대학생의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 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제대회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함
- 「지방자치법」제64조 및「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제35조에 따라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고자 함
- 동 위원회는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 기반 시설 현장 점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의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12명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 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 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올림픽과 함께 2대 국제스포츠종합경기로 꼽히는 세계 대학생들의 최대 스포츠축제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 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세계적인 행사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 기반 시설 및 대회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인 현장 방문 및 상황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함
- 대회 폐회 이후 체육 기반 시설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복합문 화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4개 시·도 의회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
- O「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 2. 특정한 안건을 심사 · 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 제35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3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39조(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